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상민 (국가정보원 소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가정보원은 2020.12.15 「국가정보원법」 개정으로 직무에 포함된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정보 조항 및 그에 따른 「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」을 근거로 우주 정보·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, 5개 조항에 불과한 현행 업무규정은 국가정보원 임무 및 기능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규정 개정을 통해 우주 관련 정보·보안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인력양성·대외협력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가. 국가정보원이 수행중인 우주 분야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제명 변경
- 나. 용어 정의를 보완하고 국가정보원이 수행하는 우주안보 업무를 구체화(안 제2조 및 제3조)
- 다. 우주안보 관련 연구·개발 방식에 전문기관 지정 제도를 도입하여 체계적인 연구관리 도모(안 제4조)
- 라. 우주안보 목적의 보안대책 수립·배포 및 암호기술 개발·보급을 명시(안 제6조 및 제7조)
- 마.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국가위성운영센터 공동 관리

바. 우주분야 업무 협력의 대상·범위를 적시(안 제10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유관기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개정안 전문, 별첨

2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非대상, 협의 완료

4) 입법예고 : 2023.11.2 ~ 12.13

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일부개정령안

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”을 “우주안보 업무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제3항”을 “제4항”으로, “수집·작성·배포”를 “수집·작성·배포 및 보안”으로, “사항을 규정함”을 “사항의 규정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“위성자산등”이란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”를 ““위성자산”이란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3호가 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며, 같은 호(중전의 제2호)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호에 다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호(중전의 제2호)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“안보 관련 우주 정보”란”을 ““우주안보정보”란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8호로 하며, 같은 호(중전의 제3호) 중 “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중 안보 관련 우주정보”를 “우주안보정보”로, “기관 및 단체”를 “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”로 하며, 같은 호(중전의 제3호) 가목 및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위성자산 및 비행체(이하 “위성자산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정보

- 나. 우주공간의 이용·탐사 및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
- 다. 위성정보 및 영상정보
- 라.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에 관한 정보
- 마.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협에 관한 정보
- 바. 우주위협에 관한 정보
2. “위성정보”란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를 말한다.
- 가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
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
- 나. 위성자산등을 개발·운영·활용하거나 우주공간의 이용·탐사·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
3. “영상정보”란 인공위성·비행체 등 영상 수집이 가능한 자산을 이용하여 획득한 자료에 대한 관독·분석을 통해 생산된 정보를 말한다.
4. “우주위협”이란 위성자산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인위적 공격행위를 말한다.
6. “우주위기상황”이란 제5호라목, 마목 및 바목의 우주사고, 우주위협, 우주위협을 말한다.
7. “국가위기”란 국가의 주권, 영토와 국민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.

9. “촬영계획기관”이란 공공기관 중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을 이용한 촬영계획을 수립·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.
-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3조(우주안보업무의 수행) ① 국가정보원장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수집·작성·배포 및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(이하 “우주안보업무”라 한다)를 수행한다.
1. 위성자산 등을 개발 또는 구매하여 운영하는 업무
 2. 우주안보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업무
 3. 국가안보 관련 우주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업무
 4. 국가 위성자산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업무
- ②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.
-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- 제4조(우주안보업무 관련 연구·개발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·정책 및 기술을 연구·개발할 수 있다.
-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·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2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
3. 그 밖에 「민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-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기준·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.
-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를 제6조로 하며, 같은 조(중전의 제5조)의 제목 “(보안조치)”를 “(보안대책 수립)”으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5조)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.
-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배포된 보안대책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특성 및 수준을 반영한 자체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조(우주위기상황 대응)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 위기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우주물체에 대한 정보 수집
2. 정보 분석 및 관계기관 배포
- ②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위기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우주위기상황에 관한 정보의 공유
2. 관계기관의 사전 대응조치 및 사후 관리조치
3. 그 밖에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
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암호기술의 개발 및 적용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를 목적으로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② 관계기관의 장은 위성자산 등을 개발·도입하는 경우에 제1항의 암호기술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암호기술을 적용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위성자산 등의 개발·도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암호기술의 적용 및 적용결과에 대한 확인·평가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국가위성운영센터) ① 국가정보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공동으로 국가위성의 효율적 통합 운영 및 활용을 위해 국가위성운영

센터를 관리한다.

②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9조(위성자산의 활용)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된 위성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촬영계획기관의 장에게 인공위성을 이용한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긴급 촬영의 경우 기간, 지역 등 범위를 지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촬영계획기관의 장은 해당 요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대외협력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또는 외국 정보·보안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,

제11조(인력양성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를 체계적인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및 양성

2.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투자

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우주안보업무와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하

여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개정안 전문

우주안보 업무규정
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 및 보안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위성자산”이란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 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 등을 말한다.
2. “위성정보”란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를 말한다.
3. “영상정보”란 인공위성·비행체 등 영상 수집이 가능한 자산을 이용하여 획득한 자료에 대한 관독·분석을 통해 생산된 정보를 말한다.
4. “우주위협”이란 위성자산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인위적 공격행위를 말한다.
5. “우주안보정보”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.

가. 위성자산 및 비행체(이하 “위성자산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정보
나. 우주공간의 이용·탐사 및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

다. 위성정보 및 영상정보

라.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에 관한 정보
마.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협에 관한 정보
바. 우주위협에 관한 정보

6. “우주위기상황”이란 제5호라목, 마목 및 바목의 우주사고, 우주위협, 우주위협을 말한다.

7. “국가위기”란 국가의 주권, 영토와 국민 등 국가의 핵심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.

8. “관계기관”이란 우주안보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가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

나. 위성자산 등을 개발·운영·활용하거나 우주공간의 이용·탐사·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

9. “촬영계획기관”이란 공공기관 중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을 이용한 촬영계획을 수립·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우주안보업무의 수행) ① 국가정보원장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수집·작성·배포 및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(이

하 “우주안보업무”라 한다)를 수행한다.

1. 위성자산 등을 개발 또는 구매하여 운영하는 업무
2. 우주안보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업무
3. 국가안보 관련 우주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업무
4. 국가 위성자산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업무

②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 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.

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우주안보업무 관련 연구·개발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·정책 및 기술을 연구·개발할 수 있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·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
2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
3. 그 밖에 「민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기

준·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.

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우주위기상황 대응)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 위기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우주물체에 대한 정보 수집
2. 정보 분석 및 관계기관 배포

②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위기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우주위기상황에 관한 정보의 공유
2. 관계기관의 사전 대응조치 및 사후 관리조치
3. 그 밖에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
제6조(보안대책 수립)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배포된 보안대책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특성 및 수준을 반영한 자체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7조(암호기술의 개발 및 적용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를 목적으로

로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② 관계기관의 장은 위성자산 등을 개발·도입하는 경우에 제1항의 암호기술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암호기술을 적용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위성자산 등의 개발·도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암호기술의 적용 및 적용결과에 대한 확인·평가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국가위성운영센터) ① 국가정보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공동으로 국가위성의 효율적 통합 운영 및 활용을 위해 국가위성운영센터를 관리한다.

②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9조(위성자산의 활용)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된 위성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촬영계획기관의 장에게 인공위성을 이용한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긴급 촬영의 경우 기간, 지역 등 범위를 지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촬영계획기관의 장은 해당 요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대외협력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또는 외국 정보·보안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인력양성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를 체계적인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및 양성

2.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투자

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우주안보업무와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안보 관련 우주 정보 업무규정</u>	<u>우주안보 업무규정</u>
제1조(목적) 이 영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직무 중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----- 제4항----- ----- 수집·작성·배포 및 보안 ----- 사항의 규정----- --.
제2조(정의)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.
1. “위성자산등”이란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우주물체와 이와 관련된 시설 및 시스템 등을 말한다.	1. “위성자산”이란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인공우주물체-----.
<신 설>	2. “위성정보”란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를 말한다.
<신 설>	3. “영상정보”란 인공위성·비행체 등 영상 수집이 가능한 자산을 이용하여 획득한 자료에 대한 관독·분석을 통해

<신 설>

2. “안보 관련 우주 정보”란 다음 각 목의 정보 중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를 말한다.

가. 위성자산등에 관한 정보

나.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,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위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우주위협에 관한 정보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생산된 정보를 말한다.

4. “우주위협”이란 위성자산에 대한 개인 또는 집단의 인위적 공격행위를 말한다.

5. “우주안보정보”란 -----
--.

가. 위성자산 및 비행체(이하 “위성자산 등”이라 한다)에 관한 정보

나. 우주공간의 이용·탐사 및 이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

다. 위성정보 및 영상정보

라.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우주사고에 관한 정보

마. 「우주개발 진흥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주위협에 관한 정보

바. 우주위협에 관한 정보

6. “우주위기상황”이란 제5호라 목, 마목 및 바목의 우주사고,

<신 설>	우주위협, 우주위협을 말한다.
3. “관계기관”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및 단체 중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. 가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나. 그 밖에 위성자산등을 개발·제작·보유하는 기관 및 단체	7. “국가위기”란 국가의 주권, 영토와 국민 등 국가의 핵심 요소와 가치에 중대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거나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. 8. ----- 우주안보정보 ----- ----- -----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----. 가.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(이하 “공공기관”이라 한다) 나. 위성자산등을 개발·운영·활용하거나 우주공간의 이용·탐사·연구와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
<신 설>	9. “촬영계획기관”이란 공공기관 중 위성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공위성을 이용한 촬영계획을 수립·작성하는 기관을 말한다.

제3조(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수집·작성·배포)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등과 그 밖의 인적·물적 자산을 활용하여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수집·작성한다. 이 경우 관계기관 소관의 위성자산등을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. ② 국가정보원장은 수집·작성한 안보 관련 우주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.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해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·유지할 수 있다.	제3조(우주안보업무의 수행) ① 국가정보원장은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마목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위성자산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 수집·작성·배포 및 보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(이하 “우주안보업무”라 한다)를 수행한다.
1. 위성자산 등을 개발 또는 구매하여 운영하는 업무 2. 우주안보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업무 3. 국가안보 관련 우주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업무 4. 국가 위성자산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업무 ②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.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	1. 위성자산 등을 개발 또는 구매하여 운영하는 업무 2. 우주안보정보를 수집하고 작성하여 관계기관에 배포하는 업무 3. 국가안보 관련 우주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업무 4. 국가 위성자산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 업무 ②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우주안보센터를 둘 수 있다.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국가우주안보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(안보 관련 우주 정보 기술의 연구·개발)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의 확보 및 활용에 필요한 기술을 단독 또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연구·개발할 수 있다. <신 설>	제4조(우주안보업무 관련 연구·개발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략·정책 및 기술을 연구·개발할 수 있다. 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·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. 1. 「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. 「국방과학연구소법」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 3. 그 밖에 「민법」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국가정보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③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지정기준·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한다. ④ 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	<신 설>	라 지정된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제5조(우주위기상황 대응)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우주위기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1. 우주물체에 대한 정보 수집 2. 정보 분석 및 관계기관 배포 ②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위기상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. 1. 우주위기상황에 관한 정보의 공유 2. 관계기관의 사전 대응조치 및 사후 관리조치 3. 그 밖에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
<신 설>	제5조(보안조치)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.	제5조(보안조치) ① 국가정보원장은 안보 관련 우주 정보 및 위성자산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안조치를 마련해야 한다.	제6조(보안대책 수립) ① 국가정보원장은 위성자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배포할 수 있다.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.

<신 설>

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배포된 보안대책을 활용하여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특성 및 수준을 반영한 자체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.

제7조(암호기술의 개발 및 적용)

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를 목적으로 암호기술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.

② 관계기관의 장은 위성자산 등을 개발·도입하는 경우에 제1항의 암호기술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암호기술을 적용하는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위성자산 등의 개발·도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암호기술의 적용 및 적용결과에 대한 확인·평가 계획을 수립·시행한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8조(국가위성운영센터) ① 국가정보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공동으로 국가위성의

<신 설>

<신 설>

효율적 통합 운영 및 활용을 위해 국가위성운영센터를 관리한다.

② 국가위성운영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가정보원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제9조(위성자산의 활용)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위기 상황과 관련된 위성정보를 우선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촬영계획기관의 장에게 인공위성을 이용한 긴급 촬영을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긴급 촬영의 경우 기간, 지역 등 범위를 지정하여 요청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촬영계획기관의 장은 해당 요청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0조(대외협력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を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및 관계기관 또는 외국 정보·보안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②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2항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정한다.

제11조(인력양성) ① 국가정보원장은 우주안보업무의 체계적인 기반 조성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전문기술인력의 확보 및 양성

2.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투자

②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이 우주안보업무와 관련된 전문기술인력의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----- 공포한 날-----
-----.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정보원	
연 락 처	spacelaw@nis.go.kr